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1196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나6509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11967 판결

전문

원고A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3. 5. 11.

판결 선고 2023. 6.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가 2017. 8. 25. '주식회사 E'으로, 2021. 7. 2.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증권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3.경 피고의 직원인 'F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권유를 받고 피고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주식종목 및 그 매매 시점 등을 추천받는 내용의 계약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순차 체결하고(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각 계약체결 무렵 피고에게 '가입 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결제수단을 변경하기 위한 결제 취소 및 신규 결제를 반영한 최종적인 지급금액이다).

G	2021-03-30 ~ 2021-09-29	2021-09-30 ~ 2022-03-31	30,000,000
H (G로 변경)	2021-04-01 ~ 2021-09-30	2021-10-01 ~ 2022-04-04	20,010,000
I	2021-04-19 ~ 2021-10-18	2021-10-19 ~ 2022-04-20	15,010,000
J	2021-06-17 ~ 2021-10-16	2021-10-17 ~ 2021-01-18	9,100,000
K (J로 변경)			
L			
M	2021-12-21 ~ 2022-03-22		10,000,000

다. 이 사건 각 계약 중 'G(H로 변경됨)', 'T', 'J', 'M'에는 '특약1. 책임 정찰제'라는 표제하에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추가적으로 제공된 무료 기간이 모두 도과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 700%('M'의 경우 500%)를 도달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6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M'에는 '서비스 제공 기간 3개월이 모두 도과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 100%를 도달하지 못할 경우 환급 절차에 따라 요청한 이용자는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합니다'라는 내용의 '책임수익 환급 증서'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계약이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1, 2, 5, 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였을 뿐이고 자본시장법 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주식종목, 매수가격, 수량, 처분시점 및 처분수량 등에 관하여 자문 및 상담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등 참조).

○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제18조), 금융투자업등록 이후에도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제20조). 나아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45조).

이와 같이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다음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이유는, 주식 등의 거래를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행위의 책임과 그 위험성에 상응하여 등록요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제96조), 서면자료 교부의무(제9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98조), 성과보수

제한(제98조의2)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 피고와 같이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개별적인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만일 자본시장법 제17조 중 투자자문업과 관련된 부분을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여 그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돈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와 같이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무자격자들에 의한 금융거래 사고 증가 및 투자자의 피해 증가로 이어져 금융거래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금융투자업등록을 거쳐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법이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거래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게 된다.

여기에다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피고와 같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을 마친 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점을 보태어 보면,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형사적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 경제적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자본시장법 제17조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참조).

그러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투자자문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투자일임계약과 달리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을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직접 행한 주식거래 등은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므로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투자자문계약의 경우 투자일임계약과 달리 그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7조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계약이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위와 같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으로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투자자문업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에 포함된 '특약1. 책임 정찰제' 및 '책임수익 환급증서'는 피고의 자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 결과 원고의 수익률이 일정 정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기간 무료로 투자자문을 추가 제공하거나 가입비를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55조의 규정 취지, 특히 금융위원회 인가 또는 등록 여부를 떠나 투자자문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행하는 경우 이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함으로써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투자자인 원고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피고가 추가 투자자문 제공 또는 가입비 반환을 약정함으로써 일정한 이익 부여할 것을 약속하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갑 제2, 5, 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약1. 책임 정찰제' 및 '책임수익 환급증서'에 기재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일정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고 만일 그와 같은 약정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합계 84,120,000원(= 30,000,000원 + 20,010,000원 + 15,010,000원 + 9,1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양승우

별지